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우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970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7.

발 의 자 : 이우현 · 김성원 · 박덕흠

이완영 · 김현아 · 김태흠

이학재 · 박완수 · 박찬우

이현승 · 정용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등기소에 의무적으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법」이 개정되므로, 「부동산등기법」상 건물표시변경등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건물의 분할, 구분, 합병, 멸실 등 건물표시 변경사유가 있는 때 건물의 소유자가 1월 이내에 그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112조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「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97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.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

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2조(과태료) 제41조 및 제43조</u></p> <p><u>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</u></p> <p><u>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</u></p> <p><u>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</u></p> <p><u>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